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상호협력협약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분야)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각종 정보의 상호 공유
2. 연구, 기술개발, 강의 등 인적자원의 교류
3.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공동 활용
4.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 전문 인력 양성
5.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현장실습,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6.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조(가족회사)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회원기업이 대구대학교 가족회사에 가입하도록 협조하고, 양 기관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비용분담) 상기 합의 사항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출연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 상의 조건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합의에 따른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0. 14.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단장 윤재 

회장 이경선 